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

확 인 서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적립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6월 22일

하나생명보험(주)
선임계리사 서 종 무 (인)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 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신탁업자로 한다.

4. 보험종목의 세목

- 확정급여형(DB 형)
- 확정기여형(DC 형)
- 개인퇴직계좌(IRA) : 기업형, 개인형

5.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구 분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나.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공시이율은 각 단위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확정급여형]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16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보험별로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공시이율은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할 수 있다.

각 단위보험별 규모	최저한도	최고한도
5억원 미만	공시기준이율의 80%	공시기준이율의 17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공시기준이율의 18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공시기준이율의 190%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공시기준이율의 200% 미만
100억원 이상		-

(※) 최고한도 산출이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16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 손익 등을 고려하여 단위보험별로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할 수 있다.

(2)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 번째 영업일로부터 14 번째 영업일까지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출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시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4)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3)의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년 2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한다.

마.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6.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나. 납입기간

전기납

다.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7.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품제공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동 상품의 제공과 관련, 업무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에 대해 상품제공수수료를 부과한다.

9. 청약서 등의 서식

-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 1 호의 서식으로 한다.
-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 2 호의 서식으로 한다.

10.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1.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계약자의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2.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3. 계약자의 보험세목 선택 및 변경

가. 계약자는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회사는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14.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5.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나'항을 준용한다.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마. 제'나'항 및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가 연금규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지급이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라'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한다.

바.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i_j}{1+i_k} \right)^{n+\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한다.

$i_j > i_h$ 인 경우 또는 보험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한다.

(2)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 + i_j}{1 + i_h + 0.5\%} \right)^{n + \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한다.

$i_j > i_h + 0.5\%$ 인 경우 또는 보험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한다.

주)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미만 절상)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15. 기타 사항

이 보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